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3월 2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도심지 노상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단체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버스의 원활한 주차를 지원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함.

2. 주요내용

- 도심의 주요 관광지 주변에 관광버스 집중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노상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‘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2조의3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1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 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) ① 시장 및 군수·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,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12조의3(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) ① 시장 및 군수·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,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.